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9일, 이개호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9.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개호의원)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①각 시·도나 시·군·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자율계정과, ②각 부처에서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에서도 ①재정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중시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으로, ②권역 간 협력과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와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¹⁾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 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을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1)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목적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보전,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등에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에는 지자체의 자율적 편성(지역자율계정)보다는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와 기능 조정이 중요한 사업(지역지원계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지원계정의 용도를 교통·물류망 확충 사업,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사업, 과학기술 진흥 사업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²⁾ 현재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 사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 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본 개정안만으로는 지역지원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략)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계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각 계정의 세출 사업에 해당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각 계정의 세입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부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출금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8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8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수정안조문대비표

법률 제2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u>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u>

<u>별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u> 6. ~ 9. (생략)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 9. (생략)	<u>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u> 6. ~ 9.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특별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u> 6. ~ 9.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u>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u> <u>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u>에 관한
---	---	---	---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9조 제1항
에 제3호의2
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의2. 「농어

촌 구조

개선 특

별 회 계

법」 제

5조 제 2

항 제5호

에 따라

회 계 로

전 입 되

는 전입

금

제80조 제1항

에 제1호의2

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의2. 「농어

촌 구조

개 선

특별회

계법」

제 5 조

제 2 항

제 5 호

에 따

라 회

계 로

전입되

는 전

입금

제81조 제1항

에 제1호의2

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의2. 「농 어

촌 구조

개 선

특별회

계법」

제 5 조

제 2 항

제 5 호

에 따

라 회

			<u>계</u> <u>로</u> <u>전</u> <u>입</u> <u>되</u> <u>는</u> <u>전</u> <u>입</u> <u>금</u>
--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8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

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8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
로 전입되는 전입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 음)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 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 별법」 제78조제2항, 제79조 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 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로의 전 출금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